

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조례·규칙 일괄제정(안)
검토보고

운영위원회(구의회사무국)

의안번호	제444호 ~ 제451호
제 출 자	김일영 의원 외 7명
의 안 명	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조례·규칙 일괄제정(안)
검 토	전문위원 정진만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「지방공무원법」이 개정 공포됨, 이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법령 개정으로 성북구의회 조례·규칙 8건을 일괄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·규칙 8건 제정

계	인사·조직	복무·징계	후생복지
8건	4건	3건	1건

나. 조례 4건 제정

- 1)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
- 2)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
- 3)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
- 4)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

- 1 -

4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일괄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법령 개정으로 성북구의회 조례 및 규칙을 일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
1)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

- 의안번호 제444호, 김일영 의원 외 12명

○ 성북구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○ 조례안 주요내용

-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: 조례의 목적 및 복무 선서 규정 함
-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: 책임완수, 근무기강의 확립 및 비밀 엄수 규정
-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: 친절·공정한 업무처리 및 근검절약 사항 규정
-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: 당직 및 비상근무, 출장, 파견근무, 겸임근무에 대하여 규정 함
-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: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, 복장 및 복복 규정
- 안 제13조부터 제27조까지 : 근무시간, 시간외 근무, 연가, 병가, 공가 등 규정

- 3 -

다. 규칙 4건 제정

- 1)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
- 2)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
- 3)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
- 4)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공무원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 - 기간 : 2021. 11. 16. ~ 11. 21.
 - 방법 : 홈페이지 게재

- 2 -

- 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: 영리업무 및 겸직, 정치운동 등 규정
- 부칙으로 본 조례제정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 함.

2)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

- 의안번호 제445호, 이호건 의원 외 8명

○ 성북구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○ 조례안 주요내용

-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: 조례의 목적 및 여비의 지급구분 규정
- 안 제3조 :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 규정
- 안 제4조 :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
- 안 제5조 :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를 규정 함.

3)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

- 의안번호 제446호, 박학동 의원 외 8명

○ 성북구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성북구의회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력증진을 위해 성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- 4 -

- 조례안 주요내용
 -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: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
 -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: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규정
 -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: 지원범위, 지원기준 및 절차, 지원 방법 규정
 - 안 제8조 :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을 규정 함.
 -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: 경비의 지급 및 목적, 운영규정

4)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

- 의안번호 제447호, 이광남 의원 외 8명

○ 성북구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- 조례안 주요내용
 - 안 제1조 : 조례의 목적 규정
 - 안 제2조 : 수당 및 여비 규정

5)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

- 의안번호 제448호, 이인순 의원 외 8명

○ 성북구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성북구의회 소속공무원의 근무에

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.

- 조례안 주요내용
 -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: 조례의 목적 및 근무기강 확립 규정
 -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: 근무상황부동의 비치 및 근무상황의 관리 규정
 -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: 시간의 근무, 휴가·출장의 절차, 전자적 근무상황 관리 규정
 -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: 업무의 인계 및 서류보관 등 규정

6)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

- 의안번호 제449호, 노원정 의원 외 8명

○ 성북구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.

- 조례안 주요내용
 -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: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 규정
 - 안 제3조 : 근무지내 출장여비 규정
 -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: 여비지급 및 정산 규정

7)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

- 의안번호 제450호, 오중균 의원 외 9명

○ 성북구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위원의 자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.

- 조례안 주요내용
 -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: 위원회의 기능, 구성, 회의 규정
 -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: 위원 임명제한 및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
 -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: 징계의 감경 및 심문과 진술권 규정
 -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: 사무직원 임명, 회의록 작성 및 징계에 관한 서식 규정

8)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

- 의안번호 제451호, 정기혁 의원 외 7명

○ 성북구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성북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성북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.

- 조례안 주요내용
 - 안 제1조 : 규칙의 목적
 -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: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 규정

- 안 제4조 : 책임 규정

○ 본 일괄 제정 조례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 등이 법령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관련 조치사항으로 성북구의회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됨.